

<p>항상에는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p> <p>그러나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96년도 수입은 29억 9,900만원이고 지출은 16억 9,300만원으로 순수익은 13억 600만원이었으나 96년 7월 1일자로 주차요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주변골목과 아파트단지 주차 및 지하철 개통으로 한강주차장 이용차량이 인상 전보다 현격하게 감소되어 주차수입도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공원이용행태 측면에서는 盛需期에는 19시 이후에 심야까지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장애인 및 노인층은 주차료 면제를 희망하는 등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p> <p>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臨時會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p> <p>본 調整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 요금징수체계는 시간제로서 요금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따라서 주차관리인력도 많이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蠶室과 독섬지구는 1회에 2,000원의 정액제를 실시해서 이용자 편의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관리인력을 최소화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p> <p>두번째는 공원 내 주차질서유지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을 盛需期 5월에서 10월에는 현재 19시에서 22시로 연장운영해서 19시 이후 공원 내 혼잡한 야간 주차질서 및 행락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p> <p>셋째는 공휴일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휴일 주차료를 평일요금의 50%를 징수하기로 하였으나 漢江市民公園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편하고 대부분 시민들의 가족단위 이용시민의 공휴일 나들이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p> <p>넷째는 광나루, 이촌지구를 계절별로 유료 전환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盛需期 5월에서 10월에는 주차장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서 공원주차질서가 혼잡하여 盛需期에는 유료 운영하고 非需期인 11월부터 4월까지의 무료</p>	<p>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p> <p>끝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료 면제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공익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p> <p>이와 같은 개선으로 漢江市民公園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번 동의에 노외주차의 7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연동으로 할 경우 漢江市民公園의 시민들의 부담이 아주 높아지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 宋德華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使用料 調整同意案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p> <p>2. 제안이유</p> <p>○여의도를 제외한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요금 체계를 시간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으로써 주차관리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을 내실화 하고, 광나루, 이촌지역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만 유료화하여 차량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한강시민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p> <p>3. 주요골자</p> <p>○지구별, 계절별 운영체계 조정으로 운영 시간 및 요금체계 개선</p> <p>○공휴일 요금징수(평일요금의 50%) 철회</p> <p>·로 이용시민 편의증진</p> <p>○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사용료 면제</p> <p>4. 검토의견</p>
---	--

<p>가.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p> <p>○동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p> <p>○상기 근거법에 의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상기 조례 제4조의2에서 “사용료는 시장이 당해시설의 규모, 투자비 및 기존 타시설의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p> <p>나. ○동의안은 여러 의안(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건의안, 결의안 등)중의 하나의 안건이며, 대표적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이 있음.</p> <p>○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p> <p>○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사용료조정 동의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요금 및 사용료부분은 본조례에 포함하여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임.</p> <p>○시설물 설치에 따른 요금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이 있으며, 여기서도 사용료 및 요금은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음.</p> <p>○따라서 한강공원에 부설된 주차장 주차요금도 마땅히 “서울특별시한강공원</p>	<p>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도록 본조례 제4조의2(사용료)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p> <p>다. 한편 현행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공용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요금의 70/100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조례가 규정한 요금이 변경될때마다 연동하여 요금이 바뀌어야 함.</p> <p>그러나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승용차 이용억제 차원에서 다소 무리해서라도 주차요금을 무겁게 하고 있으므로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요금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연동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한강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함.</p> <p>.....</p> <p>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宋德華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p> <p>委員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鄭炳權委員님.</p> <p>○鄭炳權委員 鄭炳權委員입니다.</p> <p>漢江管理事業所長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p> <p>이것 지금 제안자가 서울市長이죠?</p> <p>○漢江管理事業所長 田燦明 네.</p> <p>○鄭炳權委員 市長에게 보고했습니까?</p> <p>○漢江管理事業所長 田燦明 副市長님이 전걸했습니다.</p> <p>○鄭炳權委員 제안자가 市長 아닙니까, 市長이 모르고 있습니까?</p> <p>○漢江管理事業所長 田燦明 市長님은 알고는 계십니다.</p> <p>○鄭炳權委員 市長을 대리해서 所長이 제안설명한 것 아닙니까?</p> <p>○漢江管理事業所長 田燦明 네.</p> <p>○鄭炳權委員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에도 엄청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議會에서 아직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4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 보도자료</p>
---	---